



독일 가축통상에서 가축전염병유포에 대한 보호를 위한 명령(Verordnung zum Schutz gegen die Verschleppung von Tierseuchen im Viehverkehr)-Viehverkehrsverordnung - ViehVerkV)¹⁾

I. 서론

유럽연합의 통합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의 한 단편을 유럽연합시장내에서의 자유로운 통상에서 볼 수 있다. 자유통상의 결과, 한편으로는 원활한 물품거래가 실현되는 큰 장점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 여러 단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육류 및 어류 등의 자유로운 거래로 인한 가축전염병이 손쉽게 전 유럽연합지역으로 번질 수 있게 된 점은 결코 작은 부작용으로 볼 수 없으며 유럽연합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즉 유럽연합회원국들이 최근 들어 조류전염병(Vogelgrippe), 소광란병(Rinderwahnsinn) 및 돼지혹사병(Schweinepest)등을 상당히 자주 경험함으로써 이들 전염병 확산에 대한 유럽연합차원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가축전염병의 방지를 위해 새로운 지침의 제정을 촉발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가축전염병예방과 관련된

지침을 변환적용하는 일환으로 ‘가축통상에서 가축전염병유포에 대한 보호를 위한 명령’(이하 통칭 가축통상명령이라 한다)을 2007년 7월 6일에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가축통상명령과 유사한 성격의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가축전염병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글은 독일의 최신 가축통상명령 법규를 살펴봄으로써 본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동명령제정의 배경

동명령은 이하의 네 개의 유럽연합지침을 독일 내로 변환적용 한 것이다.

- ① 지침 90/426/EWG: 유럽평의회가 1990년 6월 26일에 제정한 것으로 제3국가로부터의 말

*** -----

1) BGBl I S. 1274 (1976).

의 유입과 말의 보유에 관한 것이다.²⁾

② 지침 90/427/EWG: 유럽평의회가 1990년 6월 26일에 유럽연합내에서의 말의거래를 위해 가축의 육종과 계보상의 규정을 정한 것이다.³⁾

③ 지침 92/102/EWG: 유럽평의회가 1992년 11월 27일에 가축의 표시와 등록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⁴⁾

④ 지침 2000/15/EG: 유럽의회와 유럽평의회가 2000년 4월 10일에 유럽연합내의 소와 돼지의 매매에 있어서 가축전염병상의 문제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⁵⁾

III. 본명령의 주요내용

1. 운송수단 및 수의사에 의한 검사

(1) 제1장: 가축운반차량과 가축적재장소에 관한 규정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살아있는 가축의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과 트레일러 및 이러한 운송에 사용되는 용기는 운송도중 가축의 배설물, 갈아주는 재료 또는 먹이가 밖으로 스며나거나 떨어

지지 않도록 만들어 져야 하고, 손쉬운 세척과 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상업적인 목적으로가 아닌 자신의 가축을 목초지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제2장: 가축전시, 가축시장, 도살장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가축전시, 가축시장 혹은 유사한 종류의 행사를 함에 있어서 주최자는 담당관청에 그 행사의 시작의 3주 이전에 서류로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담당관청은 가축전염병방지의 이유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i) 짐승들을 가축시장으로 몰고 갈 때 관청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에 담당관청은 가축전염병방정책에 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예외를 허락할 수 있다.

ii) 담당관청은 가축전염병방지상의 이유로 필요하다면 가축이 전시장으로 갈 때 관청수의사에 의한 검사를 명할 수 있다.

iii) 전염의 위험이 높은 때에는 도살장으로 가는 짐승에 대해서도 관청수의사에 의한 검사가 명해질 수 있다.

*** -----

2) Richtlinie 90/426/EWG des Rates vom 26. Juni 1990 zur Festlegung der tierseuchenrechtlichen Vorschriften fuer das Verbringen von Equiden und fuer ihre Einfuhr aus Drittenlaendern.

3) Richtlinie 90/427/EWG des Rates vom 26. Juni 1990 zur Festlegung der tierzuechterlichen und genealogischen Vorschriften fuer den innergemeinschaftlichen Handel mit Equiden.

4) Richtlinie 92/102/EWG des Rates vom 27. November 1992 ueber die Kennzeichnung und Registrierung von Tieren.

5) Richtlinie 92/102/EWG des Rates vom 27. November 1992 ueber die Kennzeichnung und Registrierung von Tieren.



2. 운송수단 등의 세척과 소독

(1) 제7장: 세척과 소독에 관한 장

① 제17조는 짐승운송차량 및 살아있는 짐승의 운송에 사용되었던 모든 용기와 도구들은 늦어도 운반시작 이후 29시간 후에는 세척되고 소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차칸, 비행기와 선박 등이 살아있는 짐승의 수송에 사용되었다면, 위의 세척과 소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동규정은 비영업적으로 자기의 짐승을 운반할 때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짐승의 운반이후 세척과 소독은 다음의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

- 첫째 : 짐승운송시에는 운전자
- 둘째 : 용기와 기구에 있어서는 사용자
- 셋째 : 제일항 3문의 경우(기차, 선박, 비행기)는 처분권한자.

② 제18조는 소독이 되어야 할 장소 및 물품들과 소독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다.

i) 소독되어야 할 곳은 짐승적재장소, 적재비면, 가축의 일시적인 체류를 위한 공간과 소, 돼지, 양, 염소, 말 또는 가금류의 시장에 공개 매매한 곳, 가축시장으로 짐승을 몰고 간 길 및 가축시장으로부터 짐승을 몰아온 길, 가축시장 또는 가축집합장에 가축을 적재하거나 가축시장에서 부터 가축을 탑재한 장소이다.

ii) 소독되어야 할 물품으로는 도살장들과 가축상인들의 사업소에서 사용되었던 기구들을 들고 있다.

iii) 소독의 책임은 각 시설의 운영자 또는 그의 기구 및 장소사용과 관련이 있는 각 행사주최자에게 있으며, 이들은 세척과 소독을 직접 하거나, 세척 및 소독 하도록 시켜야 한다.

vi) 가축숙박시설과 가축상인의 영업소는 매 사용의 후 또는 늘 자리가 차있는 경우에는 최대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세척, 소독하거나 세척, 소독을 하도록 시켜야 한다.

제18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해 담당관청은 가축전염병방지에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첫째 : 위에 언급된 길, 장소, 공간과 기구들을 규정보다 더 단시일내에 세척 및 소독되어야 할것

둘째 : 가축사업, 운송사업, 집합소 혹은 도살장에 있어서 규정보다 빈번한 세척 및 소독이 행해질 것

셋째 : 어떤 종류의 소독수단이 사용될 것인지 하는 점.

③ 제19조는 세척과 소독에 책임이 있는 자는 발생된 배설물, 갈아준 물질들 그리고 남은사료를 해가없도록 직접 없애거나 없애도록 해야 하거나, 혹은 짐승전염병의 병원체가 사멸되는 처치를 직접 하거나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증명서, 콘트롤장부

본법의 제8장은 각종증명서와 콘트롤장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제20조는 각종 증명서에 관한 규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담당관청의 령에 근거하여 첨부되는 원산지증명은 가축을 전시한 날부터 30일 유효하며, 건강증명은 다른 더 단기간을 위한 령이 없는 한 가축을 전시한 날부터 10일간 유효하다. 건강증명은 담당관청이나 담당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의사에 의해서 발행되어야 한다.

(2) 제21조는 가축거래 및 운송컨트롤장부에 관한 규정이다.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의 소유하에 있거나 보유되고 있거나 운송되거나 중재가 되는 소, 돼지, 양, 염소 또는 말 및 가금들에 대해서 다음의 사람이 컨트롤장부를 기입해야 한다.

첫째 : 영업적으로 소, 돼지, 양, 염소, 말 또는 가금류를 거래, 운송 또는 중재하거나 집합소를 운영하는 자

둘째 : 소, 돼지, 양, 염소, 말 또는 가금류를 인수받거나 제공하는 동업조합(Genossenschaft)과 생산자공동체(Erzeugergemeinschaft) 및 병아리 부화장.

② 가축거래컨트롤장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첫째 : 인수받은 장소, 날짜 및 지금까지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둘째 : 제공한 날 및 인수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

셋째 : 가축들을 집합소 또는 가축거래업소로 운송하거나 집합소 또는 가축거래업소로부터 인수해 오는 운송자의 등록번호 및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넷째 : 짐승에 대한 다음의 사항들

a) 소의 경우 귀의 일련번호

b) 돼지의 경우 수, 대강의 나이와 표시

c) 양과 염소의 경우 2005년 7월 10일 이전 태어난 경우는 수와 표시, 2005년 7월 9일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수와 제34조제3항⁶⁾에 따른 표시

d) 말의 경우 성, 색상, 대강의 나이, 표시핀(Abzeichen)과 부호(Makierung)

e) 가금류의 경우 수, 종과 대강의 나이.

(3) 제22조는 소독컨트롤장부에 관한 규정이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세척과 소독이 지시된 짐승운송차량의 운전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소독컨트롤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첫째 : 운송날짜

둘째 : 수송된 가축의 종

셋째 : 차량소독의 장소와 날짜

넷째 : 사용된 소독수단의 상호.

가축거래상, 운송업자와 집합소나 도살장의 운영자는 사용된 소독수단의 종류와 사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

6) 제34조는 본법 제11장에 속해 있으며, EG의 Nr. 21/2004명령에 따른 양과 염소의 표시와 등록에 관한 규정이다. 본조제3항은 EG의 Nr. 21/2004명령과 유럽공동체의 직접효력을 갖는 법률이 다른 규정을 하고있지 않으면 이에 표시, 귀일련번호 및 송신소에 관한 EG의 Nr. 21/2004명령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제23조는 거세 및 손·발톱손질의 콘트롤장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수의사가 아니면서 영업상 가축을 거세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느 사업소에서 거세를 하였는지가 포함된 내용을 거세콘트롤장부에 기입해야 한다. 위의 규정은 수의사가 아니면서 영업적으로 손·발톱손질을 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VI. 결론

본 글은 새로이 제정된 독일의 가축통상에서 가축전염병유포에 대한 보호를 위한 명령의 내용 중 운송수단 및 그의 세척과 소독 그리고 콘트롤장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독일의 가축통상명령은 영업상의 목적으로 가축을 수송하거나 가축거래 및 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 및 가축을 키우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주목할 수 있겠다.

첫째 살아있는 가축을 영업상의 목적으로 운송하는 차량 및 기타의 수송수단들은 가축의 먹이, 배설물 혹은 깔아준 재료가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세척과 소독이 쉬워야 한다.

둘째 살아있는 짐승을 영업상의 수단으로 수송했던 차량들 및 기차칸, 비행기와 선박은 수송개시 이후 늦어도 29시간 이후에는 소독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축이 머물렀던 곳에 발생된 배설물, 깔아준 재료 및 남은사료는 해가없이 없애야하며,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사멸되는 처치를 해야 한다.

셋째 전시를 위한 가축들은 담당관청이나 담당

관청이 위탁한 수의사로부터 10일의 유효기간을 갖는 건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이 정하는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는 소, 돼지 말, 양 가금에 대해서 일정사항을 콘트롤장부에 기재해야 하며, 소독 및 거세와 손·발톱손질에 대한 콘트롤장부도 기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2007.8.3. 일부개정 하였으며 이의 시행일은 2008.2.4.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그 목적을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법 제5조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를 제외 하고는 예방적 차원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제2장의 가축의 방역을 살펴보면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규정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가축전염병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의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즉 병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 하는 문제를 사체 및 병든 가축의 처리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사전예방에 관한 규정이 정치하지 못한 우리의 이러한 법상황에서 독일의 가축전염병유포에 대한 보호를 위한 명령은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본다.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 운송수단들에 대한 규정과 정치한 세척 및 소독에 관한 규정 그리고 콘트롤장부의 상세한 규정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며, 우리의 법도 이러한 내용을 가진 가축전염예방법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본다.

신 옥 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